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522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52218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310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대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박종학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성호

변론종결 2022. 9. 22.

판결선고 2022. 11. 1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310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임야 11,49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7. 1. 접수 제246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2011. 10. 28. 개최된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① 의안 제6호로 2006년부터 2011년도 정기총회에서 결의하여 처분한 종중 토지(이 사건 토지 포함) 매각분에 대하여 감사 결산보고에 의거하여 집행 완료하였음을 일괄 추인하는 결의와 ② 의안 제7호로 AE, K 회장 재임기간 중 종중재산 환수, 보전을 위하여 추진했던 제반사업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조치했던 제반행위를 추인하며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 자세히 설명한 뒤 업무보고를 하고 이를 찬성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19,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로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실행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또는 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 점에서도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1. 6.자 정기총회에서 위 2011. 10. 28.자 총회결의를 취소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갑 제15, 16호증),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총회결의 없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후적이고 일방적인 취소결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피고 명의 등기의 효력이 좌우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국현, 판사 김광진, 판사 이효진